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작 성 자	이름	신혜경
	담당부서 (과)	다문화가족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최성지		연락처	02-2100-6370
	과장	박정식		이 메 일	hye8942@mail.go.kr

2024. 10. 24.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2.규제조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제16조제2항 관련)													
	3.위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10.25~2024.12.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및 '24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 필요 － 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특성 상 국제결혼중개업 전 과정에 거쳐 전문성*과 윤리성 등이 크게 요구 * 모집알선, 신상정보 확인(각 국가공증인의 인증 수행 등), 해외맞선 주선, 통번역 제공 등 － 법 제2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기시행) ※ 교육이수 현황 : ('22) 7회 218명 →('23) 7회 306명 →('24) 6회 기준 419명 <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관련 내용 > ▶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 등 교육 강화 필요 (국제 이용자의 20.8%, 국내 이용자의 31.9%) < '24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주요내용 > ▶ 실무 및 제도(법률) 관련 시간 확대 요청 ▶ 비자 업무 및 계약서 작성방법 추가요청(주요 국제결혼 대상 국가의 결혼풍속, 예절 및 문화 교육, 법적·행정적 실무 대응 등) ▶ 토론형 교육 진행, 실사례 위주 교육 등 교육방법 다양화 필요													
	7.규제내용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시수 확대(1시간 추가) 정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td><td>400명</td></tr><tr><td>이해관계자</td><td>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td><td>1,600명</td></tr><tr><td>관련기관</td><td>전국 시도 및 시군구</td><td>243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400명	이해관계자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1,600명	관련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400명													
이해관계자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1,600명													
관련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243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자질) 향상을 통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59.55		59.55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시수를 확대(1시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검토방식 미적용)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59.55	0	7.52	
	15.규제 정비 계획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16조제2항 관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3>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제16조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방법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방법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구제	2	집합 교육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구제	2	집합 교육
결혼중개 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1	집합 교육	결혼중개 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및 분쟁사례, 구제절차 등 포함)	1	집합 교육
결혼중개 업 제도 및 실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2	집합 교육	결혼중개 업 제도 및 실무	- <u>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해설</u> - <u>국적, 체류 등 관련 법령 해설</u> -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 <u>기타 결혼중개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3	집합 교육
다문화사 회에 대한 이해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1	집합 교육	다문화사 회에 대한 이해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1	집합 교육
				비고: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u>실습교육(사례해결 등)을 병행할 수 있다.</u>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및 '24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 필요

- 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특성 상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전문성*과 윤리성 등이 크게 요구

* 회원 모집·알선, 신상정보 확인(각 국가 공증인의 인증 수행 등), 해외 맞선 주선, 통번역 제공 등

- 법 제2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기시행)

※ 교육 이수 현황 : ('22) 7회 218명 → ('23) 7회 306명 → ('24) 6회 기준 419명

<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관련 내용 >

- ▶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 등 교육 강화 필요(국제 이용자의 20.8%, 국내 이용자의 31.9%)

< '24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주요내용 >

- ▶ 실무 및 제도(법률) 관련 시간 확대 요청
- ▶ 비자 업무 및 계약서 작성방법 추가요청
(주요 국제결혼 대상 국가의 결혼풍속, 예절 및 문화 교육, 법적·행정적 실무 대응 등)
- ▶ 토론행 교육 진행, 실사례 위주 교육 등 교육방법 다양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교육(6시간)
	내용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소비자 보호 방안,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규제대안1	대안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교육(7시간)
	내용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1시간 추가/ 국적, 체류 관련내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현행유지안	교육시간 다소 여유
규제대안1	규제대안1	국제결혼중개 전문성(자질) 향상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도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교육훈련기관 등	개정안 검토회의 (서면/ '24.7월)	의견 없음	-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공문/'24.9.20.-10.2.)	의견 없음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수료 시 의견수렴 (만족도조사/ '24년 총 6차)	앞면 참조	의견 반영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4.10.25.-12.4. 예정)	-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4.10.25.-12.4. 예정)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법 제24조)
- * 교육 이수 현황 : ('22) 7회 218명 → ('23) 7회 306명 → ('24) 6회 기준 419명
- 현행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결혼중개업자의 직무 전문성 함양에 직접 도움되는 내용(국적 및 체류 등)을 1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교육비 무료 및 평가 미실시 등 부담 최소화 도모
-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및 '24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통한 개선 수요 반영

3. 규제목표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확대를 통해 중개업자의 전문성(자질) 향상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등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국제결혼이용자(상대방 포함)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신상정보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성 저하 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회원 모집·알선, 신상정보 확인(각 국가 공증인의 인증 수행 등), 해외 맞선 주선, 통번역 제공 등

○ (수단의 타당성)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은 강의형식(무료, 6시간, 연간 7회)으로 진행하며, 교육신청을 희망하면 참여 가능하며, 4개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 수료증이 발급됨(최근 3년 평균 수료율 100%)

* 내용 :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방안,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이미 운영 중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결혼중개업 직무수행에 직접 도움되는 교육내용(국적 및 체류 법령 등)을 1시간 추가할 경우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만족도조사 등 환류조치도 병행하고 있어 목적 대비 수단이 적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제16조제2항 및 별표3의 국제 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내용 등은 이미 일몰로 설정되었음(2022.7.1.)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교육(7시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59.5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교육(7시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9.55		59.5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9.55		59.55
기업순비용		59.55	연간균등순비용	7.52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회차별 만족도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미 운영 중인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결혼중개업 직무수행에 직접 도움되는 교육내용(국적 및 체류 법령 등)을 1시간 추가 반영한 것으로써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있고, 환류 조치도 병행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예산에서 활용 가능함(추가예산 불필요)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수료 시 만족도조사 실시(교육운영기관 주관 '24년 총 6차)
-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회의(교육운영기관/ '24.7월)
-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전국 지자체/ '24.9.20.-10.2.)
- 결혼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이용자/ '24.10.25.-12.4.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법령 개정 이후 교육수료자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육 만족도평가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 발굴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16조제2항 관련)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시수 확대(1시간 추가) 정비	2025년 2월

4. 종합결론

-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업자의 전문성(자질) 향상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 규제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교육(7시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9.55		59.5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9.55		59.55
기업순비용		59.55	연간균등순비용	7.52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예정자 교육(7시간)>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국제결혼중개업자
활동제목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교육 강화(1시간 추가)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59,551,11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교육 횟수 X 강사료 등(원) X 피규제자 집단($7 * 230,000 * 1$) 영업이익(원/시간) X 교육으로 인한 비영업일 X 피규제자 수 ($14,790 * 1 * 400$)
근거설명	* 강사료 등 : '25년 강사비(운영비 포함) 예산한도 추정치 * 영업이익(원/시간) : '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X 1.5 적용

☐ 간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활동제목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교육 강화(1시간 추가)
편익항목	교육효과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
근거설명	교육효과 관련 사항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